[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실손의료보험> <개정 2010.3.29., 2011.1.19., 2011.6.29., 2012.12.28., 2014.2.11., 2014.12.26., 2015.11.30., 2015.12.29., 2016.12.8., 2017.3.22., 2018.3.2., 2018.7.10., 2018.11.6., 2020.7.31., 2020.10.16., 2021.7.1., 2022.2.16., 2022.12.23., 2023.6.26.>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의 2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17.3.22., 2021.7.1.>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주)}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 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외래 및 조(보험가 내에서 다 감면받거나 납부하는 감면 후 은 의료비 지원에 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 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 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
	구분	보상금액
(1) 상해급여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 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 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항목 공제금액 기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1만원과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구분	보상금액	
		항 목	공제금액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3호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 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흡입, 흡수 만, 유독가 한 결과로 않습니다. ③ 피보험 요양급여 급여를 적 1. 의료비(본인이	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단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소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 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항목별	포함됩니다. 다 흡수 또는 섭취 증상은 포함되지 , 제54조에 따라 7조에 따라 의료 보상합니다. 한 규칙」에 따 해당합니다) 중] 실제로 부담한
		같은 소 제1항 <표1>의 동원항목별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	, , ,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부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 ↑ ↑ ↑ ↑
	⑥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질병급여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구분	보상금액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에서 정한 의료 · 금액으로서 요 · 본인이 부담하 의료급여 비용 ·금을 말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역	Ч
		항목 기가 제2호에 이후 이르기가	공제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지 그 그 그에 모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 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요양급여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 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	조에 따라 의료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부가보상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 ↑ ↑ ↑ ↑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
	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
	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
	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 ,
	다.
	⑧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
	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
	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
	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다. <본조신설 2021.7.1.>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
	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
	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1)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1) 상해급여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8 에 ㅂ 어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2)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질병급여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기 ਫ아 발생만 중권되묘미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
	● 러기도 한국프로코 6/무리로표 에 뛰는 나들의 귀료비에 내에서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
	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
	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
	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요실금(N39.3, N39.4, R32)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
	에 따라 보상합니다.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합니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본조신설 2021.7.1.>						

-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설 2017.3.22., 2021.7.1.>
 - 1. 비급여 의료비
 -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7.3.22., 2021.7.1.>

제4관 보험금의 지급

-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

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④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급여 또는 (2)질병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⑥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4항 또는 제5항 및 (2)질병급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 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본조신설 2021.7.1.>

제5조의2(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 ① 회사는 제18조(약 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경우,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께 설명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을 설명할 때에, 회사는 계약자에 게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제3항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본조신설 2021.7.1.>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 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 1. 1종 수급권자 : 2만원 2.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2.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상기 예시금액은 2021.5월 기준)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 1. 청구서 (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개정 2018.3.2.>

-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21.7.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1. 소송제기

2021.7.1.>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설 2014.12.26., 2015.11.30.>

-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2>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2021.7.1.>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신설 2014.12.26.>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5.11.30.>
-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를 집적하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신설 2015.11.30., 2021.7.1.>
-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

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7.1.>

-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 2. 보험금 지급 내역
-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 제1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 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5.11.30.>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 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3.2., 2021.7.1.>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8.3.2.>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개정 2020.7.31.>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18.11.6.>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따라 보장합니다. <신설 2018.7.10.>
 -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

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설 2018.7.10., 2021.7.1.>

⑦ 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신설 2018.7.10., 2021.7.1.>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21.7.1.>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4.12.26.>
-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설 2021.7.1.>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2021.7.1.>
-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개정 2015.11.30., 2021.7.1.>

- 제19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 ③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2015.11.30.>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제23조(재가입)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 항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약관의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 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21.7.1.>

-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설 2021.7.1.>
- ④ 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신설 2021.7.1.>
- ⑥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신설 2021.7.1.>
- ⑦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신설 2021.7.1.>

- ⑧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신설 2021.7.1.>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설 2021.7.1.>

제7관 보험료의 납입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개정 2015.11.30.>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2015.11.30.>
-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 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개정 2015.11.30.>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수 없습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포함합니다)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개정 2015.11.30.>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 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1.7.1., 2023.6.26.>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신설 2023.6.26.>
-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개정 2015.11.30.>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개정 2015.11.30.>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제30조(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매년 최대 25%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③ 이 조항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 최초 보험료, XX세 남자, 월 14,000원, 매년 보험료* 최대인상(25%) 가정시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함께 가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단위 : 원)

구분	XX세	XX+1세	XX+2세	XX+3세	XX+4세	XX+5세
나이증가분(A)		560	728	946	1,230	1,599
보험료 산출 기초율 (위험률 등) 증가분 (B=전년도 기준보험료의 최대 25% 기정)		3,640	4,732	6,152	7,997	10,396
기준보험료 (C=전년도 기준보험료+A+B)	14,000	18,200	23,660 (21,294)*	30,758 (27,682)*	39,985 (35,987)*	51,980 (46,782)*

* ()은 직전 2년 무사고시 보험료 10%할인 추가 적용 기준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 2015.11.30.>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제3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개정 2023.6.26.>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붙임2>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신설 2021.7.1.>
-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③ 계약자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 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명세를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②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제38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 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권리를 취득합니다. <개정 2015.11.30.>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9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1.7.1.>
-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 2014.12.26.>
-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봅니다.
-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 ④ 회사가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21.7.1.>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계약자는 이 계약(또는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신설 2015.11.30.>

-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개정 2015.11.30.>

<붙임1> 용어의 정의 <개정 2015.11.30., 2017.3.22., 2021.7.1., 2022.12.23.>

용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보험연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 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	

용어	정 의
	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	
되는 의료기관'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외래제비용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 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처방조제비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용어	정 의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 · 검사 2.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 ·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본 인부담금 상한 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 인부담금 상 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 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 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장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보장책임액 다수보험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붙임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개정 2015.11.30., 2015.12.29., 2020.7.31., 2021.7.1., 2022.2.16., 2022.12.23.>

구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장관련 보험금(제3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4.0%)
조)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8.0%)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해약환급금 (제34조 제1항)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 3. 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서신설 2020.7.31.>
 -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질병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3대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 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3대비급여 치료	용어	정 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 료·증식치료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 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 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3대비급여 치료	용어	정 의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 파 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 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 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 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 에 따릅니다.
주사료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 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 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 에 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 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 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자기공명영상	' '	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진단		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보건복지부	-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3대비급여 치료	용어	정 의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약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보장대상의료 비	* 제3관 회	d - 보장제외금액* 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비급여 병실 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원실 이용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 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1) 상해 비급여	(외래 및 차 비급여는 <i>i</i> 한 연간 보 다만, 법령 료비를 감면 은 감면받은 료비 기준으 경우, 「국 공자 예우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대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 년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 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 내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 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구분	보상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항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 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흡입, 흡수 만, 유독가: 한 결과로 않습니다. ③ 피보험? 도 그 계속 료일 다음! ④ 피보험? 도 그 계속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사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살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사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살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상합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 (1년) (180일)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
	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토이키크(이게 및 키바 국계 하사)로 바이 거의 1회의 토이어로 비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 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8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질병 비급여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의료비로 비급여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구분 차액	보상금액 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E OI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항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3만원과 보장디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 상 의료비의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 30% 중 큰 금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액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도 그 계속 료일 다음旨 ③ 피보험 도 그 계속	사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사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상합니다.
	보상대상7 (1년) ↑ 계약일 (2022. 1. 1.)	<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I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1년) (1년)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3. 1. 1.) 보상종료일 (2024. 1. 1.)
	④ 종전 계	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
	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
	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제6항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
	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
	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
	주합니다.
	⑦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
	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8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의 40%을 제3소(모임기급급적 인도 등)에서 정인 인간 모임기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라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3) 3대비급여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
	<표1>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구 분	공제금액	보장한도
	"도수치료·체외· 격파치료·증식: 로수치료·체료"로 인하여 본· 외충격파치 이 실제로 부담 료·증식치료 비급여의료비(행· 료, 약제비, 치료: 료대 포함)	- 시 1회당 3만원과 <mark>한</mark> 보장대상의료비 의 30%중 큰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
	주사치료를 받 주사료 본인이 실제로 담한 비급여의료	가 보장대상의료비 리 30%중 큰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 을 받아 본인이 전 제로 부담한 비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실 보장대상의료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	후 객관적이고 니 개선, 병변호	리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 '니다.
	1. 증상의 개선, 병변호 부는 관절가동(ROM), (MMT)를 포함한 이후 부위의 체절기능부전(로 판단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전 등과 관련하여 통증평가척도, 학적 검사, 초음 Somatic dysfur 위 제1호의 된 사가 함께 제3자 제3자는 의료법 제 정하며, 보험	떻게 확인하나요? > 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 판단결과를 합의하지 못한 바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법 제3조(의료기관)의 종합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도수치료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30회 보상 보상제외 (151일) (예: 350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23. 4. 1.) (2022. 4. 1.)(2022. 10. 31.) 보상재개 2022. 11. 1.부터 보상제외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50회 보상 (예: 300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23. 4. 1.) (2022. 4. 1.) (2022. 9. 30.) 보상재개 2022. 10. 1.부터 보상제외

-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 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2.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3.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각한잔여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80일) 기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증료일 보상종료일 (2022. 1. 1.) 1. 1.) (2024. 1. 1.) (2024. 1. 1.) (조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9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장기등"
	 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
	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
	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
	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1)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1) 상해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비급여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
	비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
	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
	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
	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
	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
	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
	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질병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호시크(N20.2, N20.4, D22)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지자 또는 하무 지하(V60 - V62 V64)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로 참이기를 케이치 '이기'이 이르체이에 이케기 바뀌지 이르비		
	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		
	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합니다)
	8.「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3)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i>J</i>)	U 커지도 되다가 지마도 한약의 '8건 비표의 커쇼비트 보장아시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대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비급여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
	를 제외하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
	~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
	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관상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도 기급이 무과하 가존 비용/TV/시원급 거취급 가존 존벼급 도이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마하니다) 이사이 이사적 스커피 과러이 어느 거시비용 가벼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3대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
	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공통 ^{주)}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
	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
	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
	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라.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마.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
	흔제거술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
	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3.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
	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
	사 제외)
	다.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4.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						
	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나.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다.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라.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						
	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						
	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						
	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본조신설 2021.7.1.>						

- 주) (4)공통은 (1)상해비급여, (2)질병비급여, (3)3대 비급여에 대하여 공통 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5조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비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3)3대비급여의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 (3)3대비급여 제1항에서 정한 연간 보상한도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속한 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 ③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하며, (3)3대 비급여의 경우 각비급여의료비별 보상한도로 합니다.
 - ④ 제3조 (1)상해비급여 제3항 또는 제4항, (2)질병비급여 제2항 또는 제

3항 및 (3)3대비급여 제7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 는 연간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② 갱신계약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전 보험료」는 매년 최대 25%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이내 기간 동안의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에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요율 상대도 계산시 보험금지급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보험료 갱신 전	0원		100만원	150만원	
12개월 이내 기	(보험금	0원 초과~	이상~	이상~	300만원
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이상
지급실적(원)	없음)	미만	미만	미만	
요율 상대도	할인 ^{주)}	100%	200%	300%	400%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

- ④ 제3항에 따른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년 상대도 적용 전 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⑤ 이 조항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최초 보험료, XX세 남자, 월 14,000원, 매년 보험료* 최대인상(25%) 가정시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함께 가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단위 : 원)

ΙГ	구분		XX세	XX+1세	XX+2세	XX+3세	XX+4세	XX+5세
	나이증가분(A)			560	728	946	1,230	1,599
	보험료 산출 기초율 (위험률 등) 증가분 (B=전년도 보험료의 최대 25% 기정)			3,640	4,732	6,152	7,997	10,396
	기준보험료 (C=전년도 기준보험료+A+B)		14,000	18,200	23,660	30,758	39,985	51,980
		1단계		17,756	23,083	30,008	39,011	50,714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D=C 에 요을상대도를 빈영한 값)	(요율상대도 95% 가정)			(20,775*)	(27,007*)	(35,109*)	(45,642*)
		2단계 (요율상대도 100%)		18,200	23,660	30,758	39,985	51,980
		3단계 (요율상대도 200%)		27,073	35,194	45,753	59,478	77,322
		4단계 (요율상대도 300%)		35,945	46,729	60,747	78,971	102,663
		5단계 (요율상대도 400%)		44,818	58,263	75,742	98,464	128,003

* ()은 직전 2년 무사고시 보험료 10%할인 추가 적용 기준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7조(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 험 표준약관을 따릅니다.